

##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PTA 회칙

### 제 1장 총 칙

제 1조 (명 칭) 본회는 '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PTA'라 칭한다.

제 2조 (주보성인) 본회의 주보성인은 성녀 모니카로 한다.

제 3조 (목적)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- 1항 주일학교 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, 배운 것을 실천하며,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부모로서 다양한 영적/물적 지원과 참여 봉사를 한다.
- 2항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회원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며, 성 가정의 모범을 본받아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한다.
- 3항 전례의 능동적인 참여와 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고, 회원 상호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친교를 이룬다.

### 제 2장 조 직

제 4조 (구 성) 본회의 회원은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주일학교 학생을 둔 모든 학부모이다.

제 5조 (회 원)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활동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다.

- 1항 본회의 회원은 주일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이다.
- 2항 본회의 투표권은 회원에 한한다.

제 6조 (임 원) 본회의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서기, 회계, 코디네이터 각 1명으로 한다.

제 7조 (임원 선임) 본회의 임원 선임 원칙은 다음과 같다.

- 1항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항 회장은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회원에 한하여 추천한다.
- 3항 회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.
- 4항 부득이한 경우 임원의 추천을 받아 지도 신부가 회장을 임명한다.
- 5항 부회장, 서기, 회계, 코디네이터는 회장이 추천한 후 지도 신부가 임명한다.
- 6항 본회의 회장은 지도 신부의 인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8조 (임 기) 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.

제 9조 (지도 신부) 본 회의 지도 신부는 본당 주임 신부가 담당하며, 모든 업무를 지도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### 제 3장 임 무

제 10조 본 회의 회원은 매일 '자녀를 위한 기도'를 바친다.

제 11조 (임 무) 본 회의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1항 (회 장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본 회를 총괄 운영한다.
- 2항 (부 회 장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- 3항 (서 기) 서기는 본 회의 회의록 등 제반 서류의 작성 및 보관, 회원들과의 업무 연락을 담당한다.
- 4항 (회 계) 회계는 단체의 모든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.
- 5항 (코디네이터) 코디네이터는 각종 행사시 주일학교 등 다른 단체와의 소통 업무를 담당한다.
- 7항 (회원/준회원) PTA의 회칙을 준수하며, 회의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에 주보성인과 같은 마음으로 협력한다.

### 제 4장 회 의

제 12조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로 개최한다.

- 1항 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10월과 5월에 개최하고, 학년 말인 5월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, 임원선거, 예산 및 결산 보고, 기타 안건 등을 논의한다.
- 2항 (임시총회) 임시총회는 지도 신부가 요청할 때,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2/3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.

제 13조 (정 족 수) 본 회의 회의는 출석회원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동수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

### 제 5장 재 정

제 14조 (회 비)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

- 1항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 시 주일학교 등록 자녀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
- 2항 특별 지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단에서 결정하고 지도 신부에게 알리며 선 지출 후 회원들에게 공지할 수 있다.

3항 특별 지출 사항의 경우, PTA 회의를 통하여 특별 모금을 의결할 수 있다.

제 15조 (경조 위문)

1항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필요에 따라 봉사로서 도움을 준다.

2항 회원의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 연미사 1대를 봉헌한다.

3항 서기가 모든 PTA 회원에게 연락을 취한다.

제 16조 (회계 연도)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로 한다.

2016. 09.17 인준

2017. 08.22 1차 개정

2018. 05.13 2차 개정

2023. 08. 26 3차 개정 \*주임신부 김현국 사도요한